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1 ~ 20
----------	-----------

제출연월일 : 2001. 6. 9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개정사유
 - 행자부에서 시달된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
 -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대학·공공청사·연수시설·공장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안 제22조제10항)
 - 재산평가액의 5% ⇒ 1%이상
 -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함(안 제27조제2항)
 -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고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아래사항을 생략함(안 제6조제3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 군지역은 990㎡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24조제2항)
 -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함(안 제27조제1항)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함(안 제27조의2)

○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

-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안 제4조제2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안 제22조)
 - 일 반 용 :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 공 공 용 : 재산평정가격의 2.5% ⇒ 2.5%이상
 - 경 작 용 : 재산평정가격의 1% ⇒ 1%이상
 - 광업·채석용 :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 주 거 용 : 재산평정가격의 2.5% ⇒ 2.5%이상
-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등을 규정함(안 제24조의2)

□ 개정근거

- 경상남도 회계13330-10836(2001. 4. 9)의 개정조례(규칙)표준안.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 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 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 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 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 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 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 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관리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면적이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나.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제10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조제목 “사용허가의 제한”을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 조제목 “사용허가 기간”을 “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3조 조제목 “사용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동조제7호 및 제8호의 “사용허가”를 각각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4조 조제목 “사용허가부의 비치”를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동조제1항 “재산관리관”을 “관리자”로, “사용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

제18조의3 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6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 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제2항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이상”으로 하고, 제6항중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 하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⑩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 하는 때

2.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3중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한다.

제2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균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 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 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 재무회 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는 제22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제3항 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 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으로 하며, 후단부분 “경우에는”을 “경우에도”로 하고,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4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u></p>	<p><u>제4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u>②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u></p> <p><u>③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u></p> <p><u>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u></p>
<p><u>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③(생략)</u></p> <p><u>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u>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하는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u></p>	<p><u>제5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③(현행과 같음)</u></p> <p><u>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2. <u>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u></p> <p>⑤(생략)</p> <p>제6조(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u>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u></p> <p>2. <u>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u></p> <p>3. <u>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인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u>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p>	<p>⑤(현행과 같음)</p> <p>제6조(군공유재산심의회) ①----- ----- ----- --.</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u></p> <p>2. <u>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u></p> <p>3. <u>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u></p> <p>4. <u>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관리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u>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p> <p>1. <u>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u></p> <p>2. <u>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관리 및 처분) ①관리책임공무원이 관리하는 <u>행정재산</u>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②<u>행정재산</u>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제6조제1항에 의한 <u>군정조정위원회</u>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u>행정재산의 용도</u> 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u>공유재산심의회</u>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면적이 900㎡이하 토지</u> 2. <u>시가 1천만원이하의 기타재산</u> <p>④(생략)</p> <p>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①<u>행정재산</u>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p> <p>②<u>행정재산</u>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u> 3. (생략) 	<p>3. <u>다음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u></p> <p>가. <u>면적이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u></p> <p>나. <u>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u></p> <p>제10조(관리 및 처분) ①----- -----<u>행정재산·보존재산</u>----- ----- -----</p> <p>② <삭제></p> <p>③ <삭제></p> <p>④(현행과 같음)</p> <p>제11조(사용·수익허가 제한) ①<u>행정재산·보존재산</u> ----- ----- ----- -----</p> <p>②<u>행정재산·보존재산</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2조(사용허가 기간) ①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u>사용허가</u>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기간만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13조(사용허가 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p> <p>1. ~ 6.(생략)</p> <p>7. <u>사용허가</u> 재산의 보존 의무</p> <p>8. <u>사용허가</u>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p> <p>제14조(사용허가부)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u>재산관리관</u>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u>사용허가부</u>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p> <p>제18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등)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생략)</p> <p>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p> <p>5. (생략)</p> <p>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p>	<p>제12조(사용·수익허가 기간)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의 <u>사용·수익허가</u> ----- -----<u>사용·수익허가</u> ----- ----- -----.</p> <p>②(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용·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u>사용·수익허가</u>----- -----.</p> <p>1. ~ 6.(현행과 같음)</p> <p>7. <u>사용·수익허가</u>-----</p> <p>8. <u>사용·수익허가</u> ----- -----</p> <p>제14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 -----<u>관리자</u>는----- -----<u>사용·수익허가부</u>----- -----.</p> <p>제18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등) ----- ----- -----.</p> <p>1. ~ 3.(현행과 같음)</p> <p>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p> <p>5. (현행과 같음)</p> <p>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 ~ 3.(생략)</p> <p>4. <u>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 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u></p> <p>5.(생략)</p> <p>6. <u>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u></p> <p>② ~ ③(생략)</p>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p> <p>2.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p>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p> <p>1. ~ 3.(현행과 같음)</p> <p>4. <삭제></p> <p>5.(현행과 같음)</p> <p>6.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u> ----- -----</p> <p>② ~ ③(현행과 같음)</p>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p> <p>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p> <p>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p> <p>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u>1000분의 50</u>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u>1000분의 25</u>로 한다.</p> <p>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u>1000분의 10</u>으로 한다.</p> <p>③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p> <p>1. <삭제></p> <p>2. <삭제></p> <p>3.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u>1000분의 50</u>.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p> <p>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u>1000분의 40</u>으로 한다.</p> <p>1. ~ 2.(생략)</p> <p>⑤(생략)</p>	<p>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 <u>1000분의 50이상</u>----- ----- <u>1000분의 25이상</u>-----.</p> <p>②----- ----- -----<u>1000분의 10이상</u>-----.</p> <p>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u>1000분의 50이상</u>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p> <p>④----- ----- <u>1000분의 40이상</u>-----.</p> <p>1. ~ 2.(현행과 같음)</p> <p>⑤(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u>1000분의 25</u>로 한다. 다만, <u>생활보호법에 보호대상자의</u>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u>1000분의 10</u>으로 한다.</p> <p>⑦ ~⑨(생략)</p> <p>⑩ <신설></p> <p>제22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p> <p>①(생략)</p> <p>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p>	<p>⑥----- ----- ----- -----<u>1000분의 25이상</u>-----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u> <u>규정에 의한 수급자</u> --<u>1000분의 10이상</u> -----.</p> <p>⑦ ~⑨(현행과 같음)</p> <p>⑩<u>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u></p> <p>1. <u>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u></p> <p>2. <u>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u></p> <p>제22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p> <p>①(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 수 없다.</u></p> <p>제22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 3.(생략)</p> <p>제24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 6.(생략)</p> <p><u>② <신설></u></p> <p>제24조의2 <신설></p>	<p><u>③ <삭제></u></p> <p>제22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u>투자</u> -----<u>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u> -----<u>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u> ----- ----- -----.</p> <p>1. ~ 3.(현행과 같음)</p> <p>제24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 6.(현행과 같음)</p> <p><u>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u></p> <p>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2. <u>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u>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군에 유리한 때</u></p> <p>2. <u>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u></p> <p>3. <u>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u></p> <p>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2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균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u></p> <p><u>③ <삭 제></u></p> <p><u>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제27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u></p> <p><u>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u></p>	<p><u>제2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제27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u> ----- ----- ----- ----- <u>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u></p> <p><u>②군수는 제22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u></p>

